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'96. 8. 14 화 순 군 수
- 나. 회 부 일 자 : '96. 8. 19
- 다. 상 정 일 자 : '96. 9. 17 (제47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)

2. 제안설명 요지

- 가. 제 안 자 : 경영정책실장 이 원 용
- 나. 제 안 이 유
 - 화순군행정기구개편에 따라 민자유치사업 업무주관부서 변경으로 관련 조례 개정코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심의위원회 부위원장 변경(안 제2조 제2항)
 - . 현 행 : 기 획 실 장
 - . 개 정 : 경영정책실장
- 심의위원회 간사 변경(안 제7조 제2항)
 - . 현 행 : 예 산 계 장
 - . 개 정 : 경영수익계장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재휴)

- 동 조례개정안은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민자유치사업 업무담당부서 변경으로 화순군조례규칙 심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답변 요지

" 생 략 "

5. 토 론 요 지

“ 생 략 ”

6. 심 사 결 과

「원안가결」

7. 첨 부 : 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1996. 8.

제출자 : 화순군수

1. 제안이유

-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에 따라 경영정책실이 신설되어 민자유치사업업무를 담당케 되었음.
- 민자유치사업업무를 당초 기획실에서 담당하였으나 신설된 경영정책실로 이관됨에 따라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2. 개정근거

- 조례 제1396호 화순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
- 규칙 제825호 화순군직제규칙개정규칙

3. 주요 골자

- 부위원장을 "기획실장"을 "경영정책실장"으로 변경
- 간사를 "예산계장"을 "경영수익계장"으로 변경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
화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2항중 "기획실장"을 "경영정책실장"으로 한다.

제7조 제2항중 "예산계장"을 "경영수익계장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
<p>제2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<u>기획실장</u>이 된다.</p>	<p>제2조 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- - - - - <u>경영정책실장</u> - - - - .</p>
<p>제7조 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</p> <p>② 간사는 <u>예산계장</u>이 되고 서기는 민자유치사업 담당자가 된다.</p>	<p>제7조 (간사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 - - <u>경영수익계장</u> - - - - - - - - - .</p>